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4 발의연월일: 2025. 3. 28

발 의 자:고동진・김상훈・최수진

김소희 • 김예지 • 조지연

한지아 • 조경태 • 서일준
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(30년 운항)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,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경우 기령(機齡)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%(33대), 30년이 넘은 헬기가 25%(12대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,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,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,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.

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·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, 산림항공 기의 기령,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·정비 등 지원, 운영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, 대형 산불 재 난에 대한 '신속 대응 인프라'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5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산림항공기 구매 및 임차 등 지원·운영) ① 국가는 산림청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 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·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기령(機齡),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 ·정비 등 지원,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	
<u><신 설></u>	제55조의2(산림항공기 구매 및 임차 등 지원·운영) ① 국가		
	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		
	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		
	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		
	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		
	교체・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		
	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		
	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		
	기령(機齡), 안전관리 및 부품		
	교체・정비 등 지원, 운영 및		
	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	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